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22493 판결 [이득상환금]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4. 12. 23.

판결 선고 2015.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86,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형제인데, 피고는 2003. 5.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지불각서〉

일금 일억원정

지불기일 2004년 5월 15.일

특약사항

강원도 원주시 C의 토지가 개발되어 매각된 A의 D 지분의 평수만큼의 토지가격이 일억이 넘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 전부를 지불기일안에 지불하기로 한다. 위반시 민형사간 책임을 진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와 관련하여 2013. 9. 16.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03. 5. 15., 발행인 피고, 지급기일 2014. 5. 15.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03년 제1277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처 E의 계좌로 2004. 5. 3. 1000만원, 같은 달 31. 2000만원, 같은 해 6. 7. 2000만원, 2007. 4. 25. 1000만원, 2008. 4. 10. 피고의 지인인 F를 통하여 1000만원, 같은 해 11. 24. 300만원, 2010. 8. 20. 피고의 직원인 G를 통하여 500만원, 같은 달 31. 피고의 직원인 H를 통하여 5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피고는 2003. 5.경 원고에게 원주시 I 임야 15231㎡ 중 원고의 소유 지분 즉, 683/696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처분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03. 5. 14.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10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각대금 중 5500만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4. 5. 15.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처 E에게 2004. 5. 3. 1000만원, 같은 달 31. 2000만원, 같은 해 6. 7. 2000만원을

각 송금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105,000,000원 중 위 대여금 5500만원을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나머지 매각대금 5000만원을 뒤늦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1억 원 중 이미 지급받은 3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7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4. 5.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가지고 있던 돈 중 일부인 5000만원으로 피고 소유의 원주시 K 임야 15174㎡ 중 피고의 지분 250평, C 과수원 23088㎡ 피고의 지분 167평 중 1곳을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해주었다.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의 지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여 원고에게 바로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 대신에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 5. 3.부터 같은 해 6. 7.까지 합계 5000만원을 원고의 처 E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5000만원을 모두 반환해준 것이고, 다만 원고가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1억 원임에도 피고로부터 5000만원만 지급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처인 E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면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 추가로 원고에게 3300만원을 더 지급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000만원을 모두 반환해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불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범위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억 원을 지급기일 2004. 5.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4. 5.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 총당

피고가 원고에게 각 변제한 돈을 원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정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한다(약정금에 변제기가 있는 경우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피고가 변제한 금원을 각 변제충당하면 다음 계산표(금액은 모두 원임)와 같다.

2004. 5. 3.	10,000,000					90,000,000
2004. 5. 31.	20,000,000	2004. 5. 16.	197,260	197,260	19,802,740	70,197,260
2004. 5. 31.	16일					
2004. 6. 7.	20,000,000	2004. 6. 1.	67,312	67,312	19,932,688	50,264,572
2004. 6. 7.	7일					
2007. 4. 25.	10,000,000	2004. 6. 8.	7,243,606	7,243,606	2,756,394	47,508,178
2007. 4. 25.	2년 322일					
2008. 4. 10.	10,000,000	2007. 4. 26.	2,278,056	2,278,056	7,721,944	39,786,234
2008. 4. 10.	351일					
2008. 11. 24.	3,000,000	2008. 4. 11.	1,242,638	1,242,638	1,757,362	38,028,872
2008. 11. 24.	228일					
2010. 8. 20.	5,000,000	2008. 11. 25.	3,302,781	3,302,781	1,697,219	36,331,653
2010. 8. 20.	1년 269일					
2010. 8. 31.	5,000,000	2010. 8. 21.	54,746	54,746	4,945,254	31,386,381
2010. 8. 31.	11일					

다. 원고의 다른 채권으로의 변제충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처 E에게 2004. 5. 3. 1000만원, 같은 달 31. 2000만원, 같은 해 6. 7.

2000만원을 각 송금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나머지 매각대금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5000만원의 반환채권의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을 있는 것인바, 위 반환채권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000만원의 매매대금반환채무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원인관계에서 취득한 이익이 5000만원임을 전제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소멸로 인한 부당이득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하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 31,386,381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 충당일 다음날인 2010.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우창